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성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966

발의연월일: 2022. 10. 27.

발 의 자 : 홍성국 · 고용진 · 김민철

민병덕 • 박상혁 • 양기대

이병훈 • 이용선 • 전용기

최혜영 · 홍익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, 6 0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70%(청년의 경우 90%)를 일정 기간동안 감면하고 이 경우 감면 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고령자, 장애인, 경력단절 여성은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으로 서 이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보조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회적 과 제이므로 소득세 감면비율을 청년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 이 있음.

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귀속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,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2.04배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,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 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청년, 고령자,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비율을 90% 일괄 적용하고, 감면 한도액을 과세기간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청년들의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,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율을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 전단 중 "100분의 70(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)"을 "1 00분의 90"으로, "150만원"을 "50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30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	제30조(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
소득세 감면) ① 대통령령으로	소득세 감면) ①
정하는 청년(이하 이 항에서	
"청년"이라 한다), 60세 이상인	
사람,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	
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	
에 따른 중소기업(비영리기업	
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기업(이하 이 조	
에서 "중소기업체"라 한다)에 2	
012년 1월 1일(60세 이상인 사	
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	
1월 1일)부터 2023년 12월 31	
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	
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	
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(청년	
의 경우에는 5년)이 되는 날(청	
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	
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	
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	
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	
날을 말하며, 그 복직한 날이	

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 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) 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(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 0)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(과 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)한다. 이 경우 소득세 감 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 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·분 할·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 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 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한다. ② ~ ⑨ (생 략)

<u>100분의 90</u>
<u>500만원</u>

② ~ ⑨ (현행과 같음)